

제 1 회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연속포럼

지역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조례 제정

2022.6.7(화) 10:00~12:50

목 차

진행순서	3
기조발제	
탄소중립 조례의 역할과 의의	5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토론	
1.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43
-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2.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46
-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54
- 김영희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 변호사	
4.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주민발안운동	61
- 장동빈 전)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	
5.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 조례제정	67
-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71
- 차승연 전)제8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7.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75
-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8. 탄소중립 관련 조례 법제도 개선사항	79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81

진행순서

지역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조례제정



진행순서

사회: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법제팀 연구위원
좌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시간	주요내용		연사
10:00 -10:10 (10분)	인사말 및 포럼소개		
10:10 -10:50 (40분)	기조 발제	·탄소중립 조례의 역할과 의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10:50 -12:10 (각 10분)	토론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김영희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주민발안운동	장동빈 전)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 조례제정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차승연 전)제8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탄소중립 관련 조례 법제도 개선사항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10 -12:50 (40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전체

기조발제

탄소중립 조례의 역할과 의의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탄소중립 조례의 역할과 의의

이 정 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발표 개요

-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시민사회 조례(안) 의미
- 종합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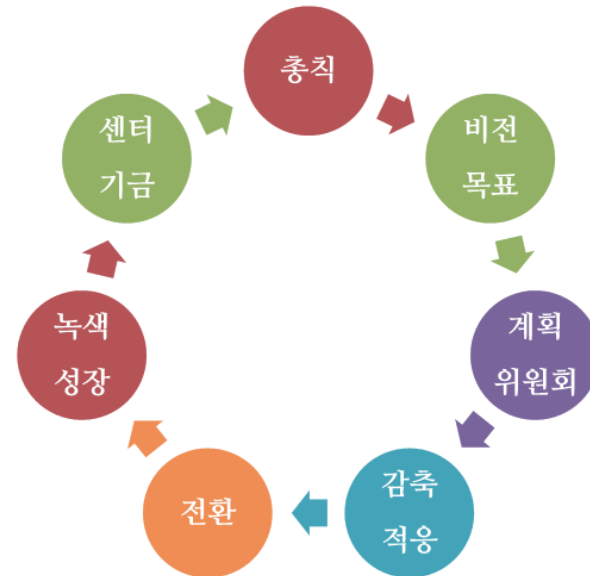


탄소중립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구성

- ❖ 제1장 총칙(1~6조)
- ❖ 제2장 국가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7~9조)
- ❖ 제3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10~14조)
- ❖ 제4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15~22조)
-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23~36조) * 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2022.9.25. 시행
-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37~52조)
- ❖ 제7장 정의로운 전환(47~53조) * 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2022.7.1. 시행
- ❖ 제8장 녹색성장 시책(54~64조) * 2022.7.1. 시행
- ❖ 제9장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65~68조) * 2022.7.1. 시행
- ❖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69~74조) * 2022.1.1. 시행
- ❖ 제11장 보칙(75~83조)
- ❖ 부칙



- ✓ '기후위기대응법' 검토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나, 국가별 정치체제와 법체계 차이, 구속성 및 안정성 차이, 역사적 맥락 차이 등 여러 차원을 감안해야 함
- ✓ 대체로 기후변화대응(감축과 완화)에 초점을 두고 관련 원칙과 방향, 개념과 정의, 전략과 비전, 목표와 방법, 계획과 실행, 거버넌스와 대중참여, 예산과 기금, 검토와 평가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됨
- ✓ 반면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대단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도 있음. ex. 프랑스: Law on 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2015), Law on Energy and Climate(2019), Climate and Resilience Law(2021)



목적과 개념(1~2조)

- ❖ 목적 : 기후위기 대응(감축과 적응), 탄소중립 과정의 불평등 해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녹색성장)
- ❖ 정의(개념)
 - 탄소중립 사회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 기후정의 :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 :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
 - 녹색성장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 녹색경제 :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 에너지 전환 :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



원칙과 책무(3~6조)

❖ 기본원칙

-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기반
-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 구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
- ✓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2조 2항),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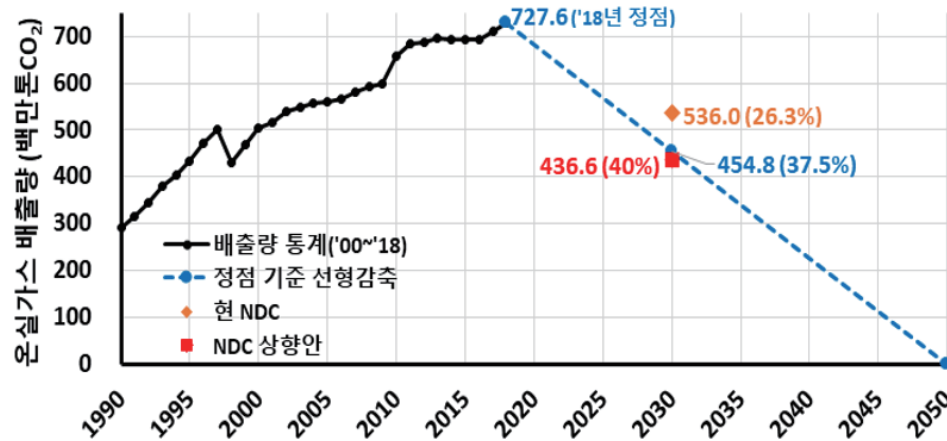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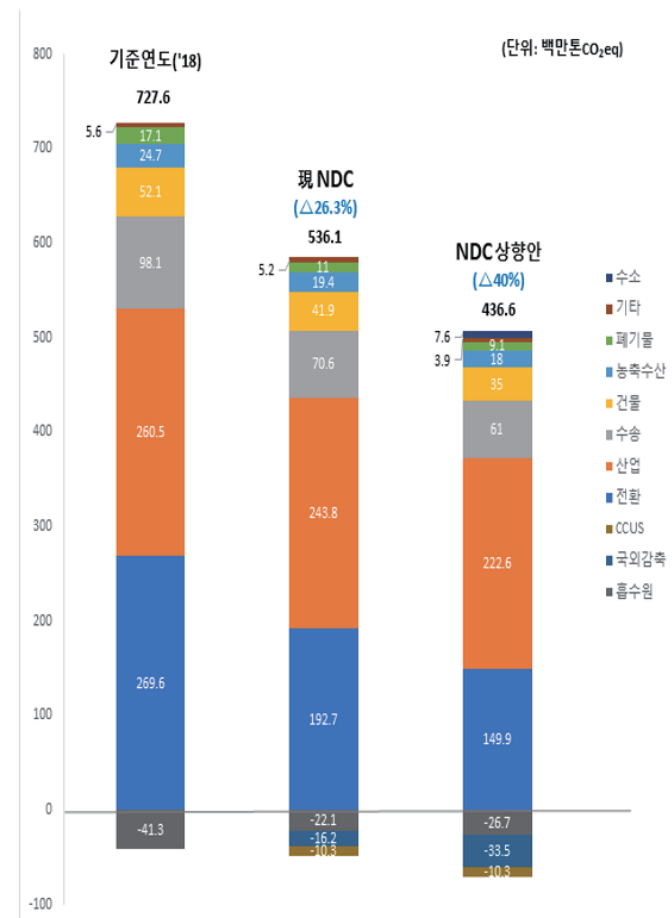
비전과 목표(7~9조)

- ❖ 국가비전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탄소중립 사회 이행, 녹색성장 도모
-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2030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5년마다 재검토, 필요할 경우 진전의 원칙에 따라 변경 혹은 설정 (5년 이전에도 가능)



- ❖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 A안: 배출량 80.4백만톤 - 흡수/제거량 80.4백만톤
 - B안: 배출량 117.3백만톤 - 흡수/제거량 117.3백만톤

•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2021.10.18);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2021.10.18)



계획과 위원회(10~22조)

-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국가) 20년 계획기간, 5년 마다 수립·시행, (광역·기초) 10년 계획기간, 5년마다 수립·시행
-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 국가위원장은 매년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해야 함
- ❖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조례를 제정·개정하려고 하거나, 국가계획/지방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
 - 국가위원회/지방위원회는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관계기관장은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심의·의결기구



감축과 적응 시책(23~46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기후위기 적응 시책

- 기후위기의 감시·예측,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5년 마다),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5년 마다),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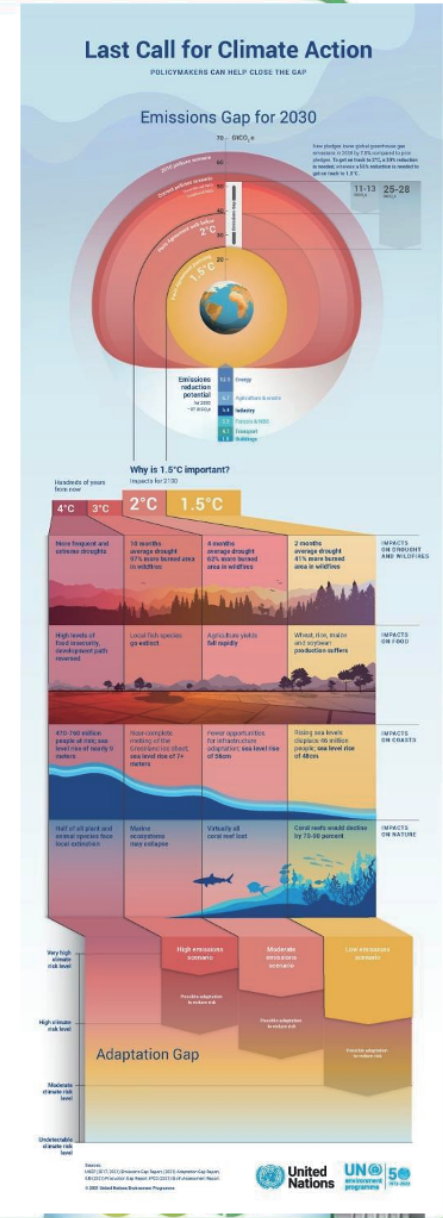
✓ 전환연구의 정책 프레임에서 ‘파괴적 혁신정책’(금지, 폐지) 도입 및 확대 가능성 중요

➤ 니치를 키워 레짐을 대체하는 창조적 혁신정책(니치 프로젝트)

➤ 레짐을 흔들어 시스템 고착을 해체하는 파괴적 혁신정책(레짐 프로젝트)

(Kivimaa & Kern, 2016)

➤ 화석에너지의 사용의 단계적 축소(2조), 내연기관차의 판매·운행 축소(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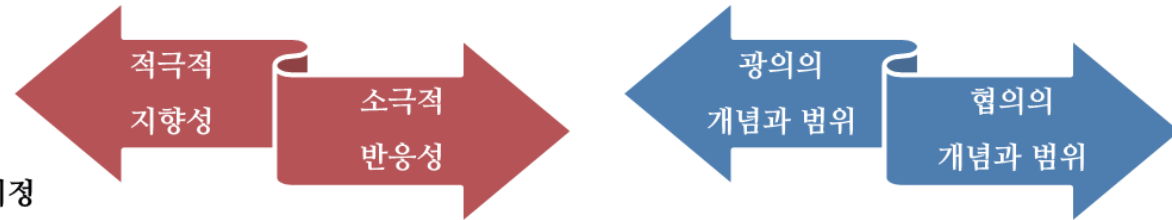
정의로운 전환(47~53조)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주요 정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 사업전환 지원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 국민참여 보장 지원
- 협동조합 활성화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지역)전환정책 구상

구분	회고적	전망적
좁은 범위	보상 (피해 손실 금전적 보상)	구조조정 적응 (지원 보조)
넓은 범위	특례 (적용 유예 및 예외 조치)	대안모델 전환 (지원 보조)

* 자료: Green(2018)



녹색성장(54~64조)

❖ 녹색성장 시책

-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조세 제도 운영,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의 활성화
 - 조세 제도의 운영의 경우, 기후위기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 운영
 -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의 경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재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 수립·시행
- ✓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글래스고 기후합의) 관련 쟁점 예상



확산 방안(65~68조)

- ❖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 생산·소비 문화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해야 함. 재화의 생산·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량,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녹색생활 운동의 경우, 국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전개해야 함
-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69~74조)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해당 금액,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 수입금 등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1)

- ❖ 2030년 감축목표 40% 설정(3조)
- ❖ 기후변화영향평가(15조, 별표2의 계획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81개 중 28개 대상

분야	에너지개발	산업단지·산업단지조성 (50만㎡이상)	도시개발 (100만㎡이상)	도로건설 (12km이상)	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적용대상 (28개)	에너지시설설치등5개 (신재생원자력에너지및 직접배출낮은사업제외)	산업단지개발등6개	주택지구조성등13개	도로건설사업1개	공항또는비행장 건설사업1개	폐기물기축분노 처리시설2개
적용시기	2022.9.25.부터			2023.9.25.부터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16조),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업무 지원
- ❖ 탄소중립도시의 지정(28조),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으로 직접 지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요청서 제출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등
- ❖ 고용상태 영향조사(48조), 고용노동부장관 5년마다 정기조사, 피해가 현저한 경우 수시조사 시행
-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49조),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지정기간 2년(연장 가능, 총 5년 초과 불가), 시도지사 신청서 제출 (* 입법예고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2021.8. 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특구를 지원할 수 있음)
-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53조),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및 고시 기관,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설립 운영(조례)
 -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추진동향의 조사 및 연구, 지역별·산업별 대체산업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지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산업·고용·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2)

- ❖ 사업전환 지원(50조),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고시 업종 (* 입법예고 삭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준용)
- ❖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5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아래 대상 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전환 대상사업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전환비용에 대한 금융 및 자금 지원 시책 수립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50,000tCO₂ eq 이상인 기업이거나 15,000tCO₂ 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 법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5년 계획기간 감축목표 및 연도별 관리목표 협의하여 설정·관리) 기준과 동일)
-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립 및 지정(조례)
 -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산업전환과 노동전환 법제 정비(안)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2021.4. 출범)

비전과 목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0]

구 분	18년	50년(Net-zero)
①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16.5%	84.1%
② 탄소 집약도 (탄소배출/부가가치)	496톤CO ₂ eq/십억원	68톤CO ₂ eq/십억원 (△86%)
③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4강 안착

추진방향과 전략

- 탄소중립을 기외로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총력지원으로 산업계의 부담은 최소화
- 탄소중립에 따른 소외계층 없이 모두 도약하는 대전환 실현

<p>산업구조 저탄소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 확보 기업부담 경감 전폭적 정부지원 저탄소 시대 맞춤 제도 구축 	<p>탄소중립 확산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에너지 기반 확보 탄소가치 반영 시장 창출 빈틈없는 탄소중립 공급망 관리
<p>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대 분야 등 성장동력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소부장 : 바이오·이차전지 등 - 그린 플랫폼 : 친환경공장 EPC 등 - 친환경 인프라 : 수소·모빌리티 등 	<p>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저탄소 혁신 전통산업·인력 선제적 미래전환 지역경제 녹색 균형발전 추진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산업계 수요 기반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 구축
- 산업 대전환의 플랫폼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 자료: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2021.12.10)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2021.7)

정책방향: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지역 피해 최소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지원 보강

<p>신산업 분야</p> <p>혁신성장 육성·지원 전문인력 양성·공급</p>	<p>기존산업(고탄소·노동집약)</p> <p>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지역 유망·대체산업 육성</p>	<p>국가 경제</p> <p>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공정한 전환 실현</p>
---	--	---

추진전략: 노동전환의 시급성·규모에 따라 전략적 대응 +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p>저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노동전환 수요가 크고 단기간내 발생 ⇒ 신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사업재편·전환 지원 + (근로자) 직무전환, 전직·재취업 지원 + (지역) 대체산업 육성, 위기지역 신속 지정 [철강·정유·시멘트 등] 탄소중립 영향 가시화 / 노동전환 수요 중장기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지역별 일자리 모니터링 + 구조전환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 전망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
<p>디지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친화적 디지털화 지원 (근로자)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평생직업능력 향상 지원, 고용안정망 강화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중양단위 거버넌스 및 지역단위 전달체계 구축
- 법률 제정
- 사회적 대화

* 자료: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2021.7)

-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1.9)
-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2021. 12)



*

탄소중립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 규정(요약)

- ❖ 의무규정
 -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광역/기초, 법 11~12조, 13조)
 - 조례 및 행정계획(위원회 검토, 법 14조)
 - 온실가스감축인 예산제도(법 24조)
 - 탄소중립 도시(법 29조, 시행령 28조) : 환경부/국토교통부 지정, 지방자치단체 지정 요청 가능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법 36조) :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협력(제출 의무)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집행(광역/기초, 법 40조, 42조)
 - 의회 보고(법 78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법 79조)

- ❖ 임의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법 22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법 48조, 시행령 49조) :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지정, 지방자치단체 지정 요청 가능
 -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원 및 특례(법 59조)
 -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법 53조, 시행령 53조) :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설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선정 시도지사 설립 가능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법 65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법 68조)
 - 기후대응기금 설치(법 6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법 81조) :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일부의 위임 가능

- ✓ 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책무 강화, 그러나 권한 및 역량 측면은 쟁점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시민사회 조례(안) 의미



환경부 <탄소중립기본조례>(참고조례안) 개요

- ❖ 지역에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 검토 중요
- 감축목표, 기본계획, 위원회, 감축 시책 등
- ❖ 지역에서 대폭 보완이 필요한 부분 검토 중요
- 적응 시책, 정의로운 전환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원칙)
	제3조(시·도의 책무)
	제4조(시·도민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현황 점검)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의)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회의)
	제16조(분과위원회)
	제17조(위원회 사무국)
	제18조(간사)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9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제20조(신·재생에너지 전환)
	제21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3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24조(탄소흡수원 확대)
	제25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지역 물관리 사업)
	제27조(정의로운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협동조합의 활성화)
	제2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31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부칙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제4조(적용례)	



광역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12. 제정)
 - 탄소중립 지원센터 조항 신설(2022.5.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2022.4. 제정)
 -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4. 입법예고)
 - <강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2022.4.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4.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입법예고)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2022.5.25. 검색 기준(추가 입법예고 조례 존재)



광역시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약평

❖ 조례의 핵심 조항 포함 여부 및 적절성 평가

- 향후 체계적 분석 필요(감축/적응 시책 등 포함)
- 전반적으로 환경부 참고조례안 의존도 높은 편
- 광주 기본조례 긍정적 평가, 충남과 같이 유관조례 포함 종합 검토 중요

	2030목표	정의 전환	녹색성장	주민권리	위원회	기본계획	지원조직	기금	유관조례
충남	-	-	△	-	△	▽	-	-	전환기금, 전환지원
세종	-	-	△	-	○	○	○	-	-
광주	40% 이상 (‘45년 중립)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기후기금
대구(예)	-	△	△	-	○	○	○	○	-
부산(예)	-	▽	△	-	△	△	○	○	-
강원(예)	-	▽	△	-	○	△	○	○	-
대전(예)	-	-	▽	-	△	△	○	○	-
울산(예)	-	▽	▽	-	△	△	○	-	-

* 주: ○(상), △(중), ▽(하) - (해당 없음)



광역 지방정부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2021.2. 제정)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조례>(2021.7. 제정)
 - 그린뉴딜추진계획, 그린뉴딜위원회 등
-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2022.4. 제정)
 - 지원계획 수립(매년), 노동전환지원 및 훈련센터 설치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심의·자문기구, 민간 15명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2022.4. 제정)
 - 종합계획, 사업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2022.1. 제정)
 - 기본계획, 추진위원회 등
 - cf.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2010. 11. 제정)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2021.12. 제정)
 -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등(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사업 포함)
-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2.3. 제정)
 - 기금 및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도봉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9. 제정)
 - <태안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2021.11. 제정)
 - <대전광역시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1.12. 제정)
 -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1.12. 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12. 제정)
 - <대구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기본 조례>(2021.12. 제정)
 -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2.2. 제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2022.2. 제정)
 -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3. 제정)
 -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2022.4. 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속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4. 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제정)
-
- <담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4.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2022.4. 입법예고)
 - <강릉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입법예고)
 -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입법예고)
 -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입법예고)
 -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2022.5. 입법예고)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약평

	2030목표	정의 전환	녹색성장	주민권리	위원회	기본계획	지원조직	기금	유관조례
서울 도봉구	-	-	-	-	-	▽	-	-	녹색성장
충남 태안군	-	-	-	-	-	▽	-	-	녹색성장, 전환협의
대전 서구	35% 이상	-	▽	-	△	△	○	-	-
경기 광명시	-	▽	▽	-	▽	○	-	▽	-
서울 서대문구	35% 이상	▽	▽	△	○	○	○	○	-
대구 북구	-	-	-	-	-	▽	-	-	-
경기 하남시	-	▽	▽	-	▽	○	△	△	-
대구 수성구	-	-	-	-	-	△	-	-	-
서울 구로구	-	△	▽	-	○	○	○	-	-
경기 과천시	-	-	-	-	○	○	-	-	탄소인지
대구 달서구	-	▽	▽	-	○	○	○	-	-
전남 여수시	-	△	-	-	-	▽	▽	-	마을조성
강원 속초시	-	-	▽	-	○	○	○	-	-
서울 성동구	-	-	-	-	○	○	-	-	-
경기 성남시	40% 이상	-	-	-	○	△	○	○	-
전남 담양군(예)	-	-	▽	-	○	○	-	-	-
서울 은평구(예)	-	-	▽	-	○	△	-	-	-
강원 강릉시(예)	- (‘40 중립)	-	-	-	△	○	○	-	-
서울 동대문구(예)	-	-	▽	-	○	○	○	○	-
경기 고양시(예)	-	△	▽	-	○	○	○	○	실천연대
전북 전주시(예)	-	-	▽	-	○	○	○	○	-
경기 군포시(예)	-	-	-	-	○	△	○	○	-



기초 지방정부 탄소중립 유관 조례 제정 현황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3. 제정)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의 구성 및 지원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9. 제정)

 - 탄소중립 추진/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공정한 전환 도모 위해 대덕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1.4. 제정)

 -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영향평가, 운영위원회(자문기구, ~15명),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과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1.12 제정)

 -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탄소감축영향평가, 운영위원회(자문기구, ~15명),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2022.2 제정)

 -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운영위원회(자문기구,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대행),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 <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 조례>(2021.11. 개정)

 - 에너지센터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신설)
- <태안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022.2. 제정)

 -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정의로운 전환 규정, 협의회(~20명,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여수시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2022.4. 제정)

 - 기본계획, 심의위원회, 읍면동 추진위원회, 지원센터 등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1~6조)
- ❖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7~11조) : 2045년 탄소중립, 2030년 40% 이상 감축(2018년 대비), 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 ❖ 제3장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등(12~19조) :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20~ 30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공공부문 목표관리,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탄소중립도시 추진, 에너지 전환 시책의 추진,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녹색식생활 활성화,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 ❖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31~ 37조) :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 구축 등,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축산의 전환 촉진, 시민 건강관리
- ❖ 제6장 정의로운 전환 등(38~45조)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사업전환 지원, 시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의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지역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 등
- ❖ 제7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46~51조)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협력체계의 구축,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대응 성과관리
- ❖ 제8장 기후대응기금 등(52~56조) : 광주광역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의회 보고 등, 탄소중립백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1~7조) : 주민의 권리와 책무
- ❖ 제2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 등(7~13조) : 2030년 35% 이상 감축(2018년 대비), 기본계획의 수립,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제3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12~19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 등의 공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 조치
- ❖ 제4장 기후위기 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영(20~ 29조)
- ❖ 제5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등(30~40조) :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재정지원 등, 협동조합 활성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구의회 보고 등, 참여활동에 대한 포상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배경

-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 ❖ <경기도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 ❖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시민안) 작성 경과
 - 2021.09.26. 도 조례 초안 작성
 - 2021.10.01.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조례 초안 1차 검토
 - 2021.10.14.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조례 초안 2차 검토
 - 2021.11.02.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조례 보완
 - 2021.11.23.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 시민안 공청회 개최
 - 2021.12.09.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 2021.12.17.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TF 기획회의, 조례(시민안) 확정/배포 및 향후 과제 논의(조례제정 운동 등)
 - 2022.01.27. 시·군 기본조례(시민안) 작성
 - 2022.02.22.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자 예산제 운영 조례(시민안) 작성
 - 2022.04.21.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주민발안 운동 선포(경기도 및 수원, 고양, 남양주, 안성, 안산, 안양, 의정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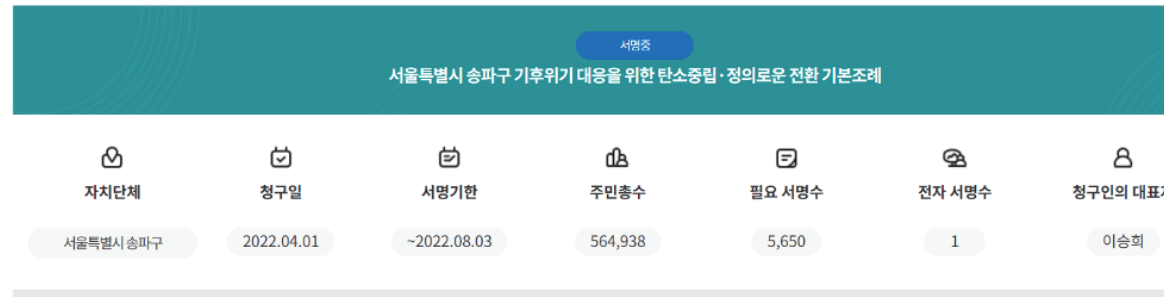
- ❖ 녹색당 <OO시/ 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2022.3.17.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운동본부, 조례안 공청회 개최
 - 2022.4.11.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 발표 기자회견

- ❖ 민주노총 <OO/ 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2022.5.17.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의 과제 토론회



최근 주민조례 발안(청구) 사례(2022년)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서명기간 1.4.~4.26.)
-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역사회·생태계와의 공존을 위한 지원 등 조례(서명기간 1.17.~8.23.)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서명기간 4.1~8.3.)
 - 송파기후행동,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등 참고하여 작성
 - 제40조(기후위기를 심화하는 광고 금지) 추가 특징



* 자료: 주민e직접(juminegov.go.kr)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취지

-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자치 법규 마련
 -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위임사항 반영
 - ❖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조례(시민안)의 연계성 확보 및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 고려
 - ❖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관련 계획 및 정책의 성과와 한계 검토
 - ❖ 시민·이해당사자들의 참여·숙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공론장 활성화(주민조례청구 등)
 - ❖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및 합의사항 반영
-
- ❖ 조례 구성 및 내용의 특징과 한계
 -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 반영, 1) 기후위기대응(감축·적응), 2) 탄소중립 과정의 불평등 해소, 3)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연계성 확보 및 포괄적 범위 유지
 -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접근 강조, 그러나 그 구상과 수단은 지방정부의 사무범위 등 지방자치권의 한계 고려
 - 주민 권리, 지방자치단체 역할, 이해당사자 참여 거버넌스 강조
 -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조향으로 축소 조정
 - 타 지역에서 경기도 및 시·군 조례(시민안) 활용(수정·보완) 기대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발안법 제4조, 지방세·부담금 등 부과·징수·감면,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 실정법 제약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개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도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비전)
	제9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10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3조(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제14조(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의 구성·운영)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회의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및 도민정책참여단, 사무국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8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제2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1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제2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5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제2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29조(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제30조(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제31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32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제34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35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제36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37조(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8조(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지원)
	제39조(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40조(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4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제42조(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참여)
	제4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44조(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4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46조(기금의 용도)
9장 보칙	제4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제4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9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 주: 2022.5.10. 기준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시민안)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1~7조) : 도민의 권리와 책무
- ❖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8~10조) :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2018년 대비 50% 이상 하한선 설정
- ❖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11~13조) : 조례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
- ❖ 제4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등(14~17조) : 분과위원회·도민정책참여단·사무국의 설치
- ❖ 제4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등(14~17조) : 심의·의결 기구 (* '합의제 행정기구' 삭제)
- ❖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18~27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순환경제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28~34조) :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 ❖ 제7장 정의로운 전환(35~44조) : 정의로운 전환대책의 수립·시행,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지원, 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 ❖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45~46조)
- ❖ 제9장 보칙(47~49조)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주요 특징

- ❖ 녹색당 <OO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특징
 - 강행규정 및 주민참여 적극 활용
 - 기후변화영향평가(주민투표)
 -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제 시행, 기후정의예산 확보(최소 20%), 20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매해 3%의 그린리모델링 추진/2025년까지 전기 버스 100% 전환 의무규정, 위반의 경우(주민소환) 등
- ❖ 민주노총 <OO/시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특징
 - 노동 부문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 방안 명시
 - 노사교섭, 노정교섭, 작업중지권, 임금보전, 지역공기업 통한 고용유지 및 공공성 담보(에너지, 교통, 폐기물 분야) 등



종합 토론



탄소중립기본조례 종합토론

❖ 환경부 참고조례안의 의미

- “각 지역에서 조례 입안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참고조례안의 내용을 조례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과제 제안

- 입법권,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치권이 제한된 지방자치의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기후정의 기본조례 제정(또는 개정)을 포함한 자치법규 마련 중요. 기본조례 이외 유관 개별조례 포함 자치법규 일괄정비도 중요
- 지역의 특징, 여건과 지향을 반영하는 논의 필요.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둘러싼 쟁점 발생은 당연. 쟁점 확인과 종합 토론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합의 과정(공론화) 추구 필수
- 기본조례이나 개별조례에 반영할 새로운 아이디어 적극 발굴 및 채택(채식선택권 보장, 탈화석연료 금고 지정, 기후위기 심화 광고 규제 등)
- 도시계획(조례·위원회) 등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확보 등 탄소중립 기본조례 및 기본계획의 위상 강화 노력 필수
- 지방의 책무와 함께 단체자치 및 주민자치의 권한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역제안 병행(자치·분권 이슈 연계)
- 학교급식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사례처럼, 아래로부터/지역으로부터 촉발된 조례제정 운동의 성과와 교훈을 탄소중립/기후정의 기본조례의 제·개정에 적용 필요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기후변화대응조례가 있어도 기후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새로운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체계 검토

❖ 현행 체계 검토 및 쟁점 확인 후 개선 과제 도출

	현행 체계 검토 및 쟁점 확인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방향
1	정책연계/통합 방안 및 행정부서 개편	
2	탄소중립위원회 및 이행점검 방안	
3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에너지센터 등 고려)	
4	탄소중립 사회적 협약	
5	정의로운 전환 플랫폼 구축	
6	주민조직/주민자치 활성화 및 지원(의사결정과 사업참여)	
7	교육/홍보/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체계 활성화	
8	시민참여 정보플랫폼/툴킷 구축 및 공개	
9	탄소인지예산/기후영향평가 도입	
10	예산/기금 등 재원 마련	
11	광역-기초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12	탄소중립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일괄정비	
13	탄소중립 자치/분권 요구사항 마련	
14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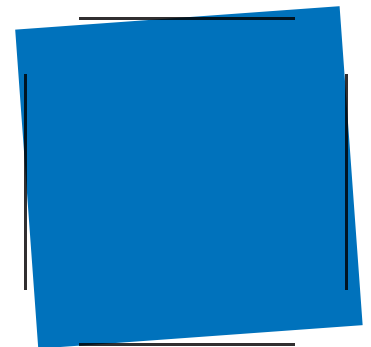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개별토론 1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김광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탄소중립 조례제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1. 조례제정 과정이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확산의 계기를 만들고 있는가?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의 연대와 협력의 과정을 만들고 있는가?
- 각 조직의 목표와 활동방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는가?
- 행정의 담당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행정 시스템으로 되도록 하는가?
 - 기획조정실부터 주요 관련 실·국의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 조례제정 이후, 이행점검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2. 쟁점이 되었거나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주제들

- 조례와 무관하게 그동안 구성되고 활동해 온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광주탄소중립추진위원회, 지역에너지전환거버넌스, 자원순환협의체 등등)
- 목표설정 관련해서, 2030년 목표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넣으면 목표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2045년과 2030년 온실가스감축 목표 기재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숫자를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사무국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실질적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5개 자치구, 시민사회와 기업 등 광주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협력, 실행이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 탄소중립도시 광주연대회의
- 온실가스감축시책 분야별 조항 신설 관련- 녹색식생활 분야
-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기본계획 및 행정계획 별첨리스트

3. 광주광역시 조례제정 과정

1)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광주 시민사회의 활동과 분야별 거버넌스 조직구성

-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2020.03.01. 결성)
 - 110여개의 시민사회·종교·마을조직 등이 결합(자치구별로도 기후위기비상행동 조직)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탄소중립선언과 기후위기대응 계획을 수립하

도록 견인차 역할

- 매주 금요일 시청광장 캠페인을 필두로 광주 곳곳의 마을과 소속기관(단체)별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캠페인 진행
- 기후강사단 양성부터 에너지·자원순환분야 등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 에너지, 자원순환, 먹거리, 대중교통활성화 등 의제별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
- 광주광역시의회 '기후위기대응 그린뉴딜특별위원회'구성(2020.09.02.)
 - 실국 업무보고 및 평가회
 - 시민여론조사 및 정책연구
 - 제도개선과 기반구축, 정책반영을 위한 집담회, 토론회
 - 조례제정, 예산반영
- 광주광역시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결성 (2021.02.25.)
 -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회의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 5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구청장,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상임대표 총10명의 대표단
 -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
 - 실국별 거버넌스 구축(행정(광주시·자치구청), 교육청, 시민사회, 연구자, 기업 등 15명~20명 안팎)
 -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전환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 교통건설국의 대중교통활성화(자전거정책 포함), 자원순환분야 등의 활동이 이어짐. 시민사회의 힘과 행정의 의지가 있는 곳 중심으로 활동량과 영향력이 생김

2) 조례제정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 진행(TF, 집담회, 간담회, 열린토론회 등)

4. 광주가 놓친 것들,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

- 1) 광범위한 시민참여 방식을 더 촉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 2) 실제 조례 내용에도 시민참여에 기반한 기후위기대응 정책설계와 추진과정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 3)
- 4)
- 5)

개별토론 2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김연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장

◆ 탄소중립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로 봤을 때 배출권 거래제 등 중앙정부를 통해 관리되는 비율은 70% 정도이며, 나머지 30%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방안’의 ‘17년 온실가스 배출 통계 기준 광역시·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 44백만톤CO₂eq 중 관리 권한 내 배출량은 13백만톤CO₂eq으로 30% 정도 수준이다.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이다. 산업, 수송,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구성원들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각자가 속한 분야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대응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일과가 끝난 후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누구도 지금의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탄소중립에 대한 견실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DNA를 아로새기는 역할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이며, 이는 중앙정부보다 대국민 접점이 높은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충청북도는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내실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법률가, 학계, 연구기관, 환경·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청북도만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과정

‘충청북도 탄소중립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 도민의 의견을 조례에 골고루 담아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충청북도 탄소중립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형식적, 일방적,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수차례 걸친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조문을 작성하고 법률가의 자문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절차, 형식,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긴 시간 논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통해 충청북도의 기후 행동 의지를 결집하고 우리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로 안착하고자 한다.

◆ 조례에 담겨진 충청북도의 특성

1. 도민의 알권리 및 참여 보장

✓ 조례안 제4조(도의 책무)

도는 탄소중립 시책·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민 누구나 탄소중립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관이 함께 실현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였다.

✓ 조례안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도는 충청북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표준조례안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중장기’가 언제인지 도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 기존) 충청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변경) 충청북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9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등)**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정합성 검증, 심의 및 중앙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공개를 거친 후, 도민 접근이 쉬운 도 홈페이지, 환경백서 등을 통해 이를 게시함으로써 탄소중립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 **조례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청년,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탄소중립 시책 수립·운영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전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2. 충북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 **조례안 제22조(탄소중립 도시의 운영 및 확산)**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난 2022. 4. 27일 환경부 공모사업인「탄소중립 그린도시」사업에 충주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주도적 이행체계를 통한 친환경 공간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조성 및 내실 운영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정보 등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여 제2, 제3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이끌 선도 지역(道)으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조례안 제23조(신·재생에너지 전환)**

도지사는 공공기반시설을 비롯하여 **공장,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28조(농·축산업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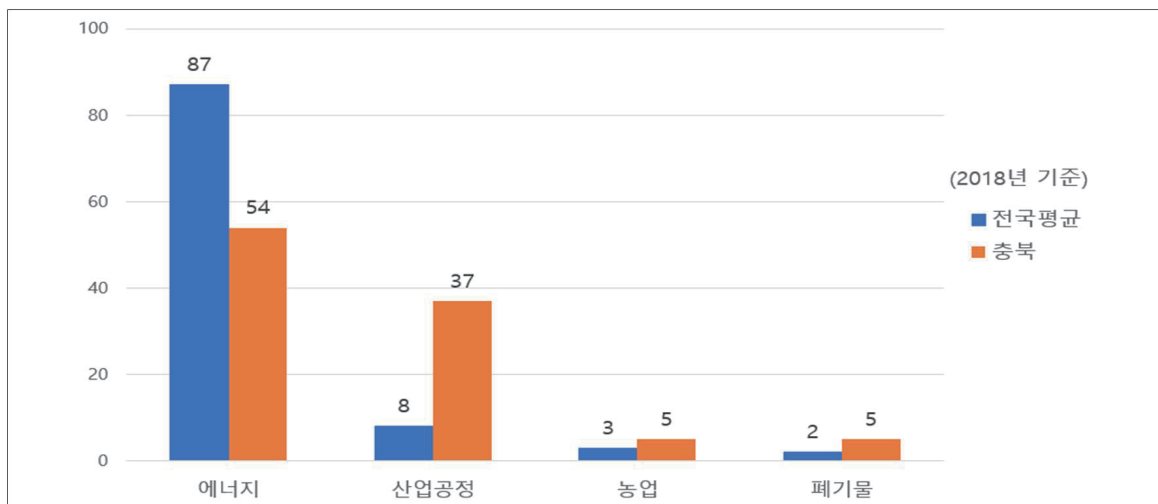
도지사는 농작물의 재배, 가축 사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축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29조(자원순환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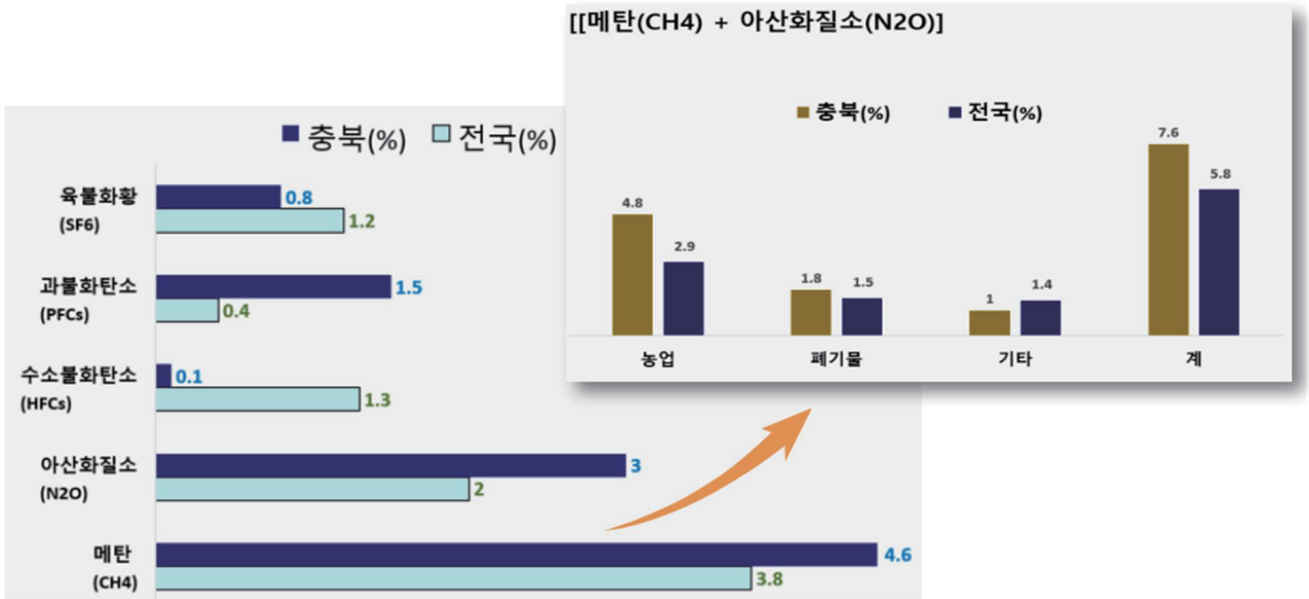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가장 높은 충북도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부문의 에너지 이용구조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과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국 평균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감축 시책 및 이행조항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다.

[* `18년 기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전국 vs 충북]



[`18년 기준, 농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전국 vs 충북]



◆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요건 상향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72조에는 탄소중립 정책의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실·국장 직급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있다.

충청북도도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22. 3. 25일)과 동시에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을 독려하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4. 22일, 도-시·군 탄소중립이행책임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시 개진된 의견 중 다수는 일선 시·군의 경우 '탄소중립'을 환경 관련 부서만의 업무로 본다는 점이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전환, 산업, 농축산, 폐기물 등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중립 경로를 제시했듯이 탄소중립은 일부 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각 부문 소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력의 도모를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부단체장 급으로 상향하고 업무의 범위를 행정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대상 등의 확대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수립의 지원과 지역 온실가스 통계·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

광역시·도청 소재지의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지원센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등이 구축된 편이나, 일선 시·군 특히 군 단위의 경우 이러한 인프라가 매우 척박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거나 광역과 기초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 등으로 ‘광역 거점형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탄소의 사회적 비용 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 Social Cost of Carbon)은 1t의 탄소 배출로 인해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말한다.

美 바이든 정부는 '21. 1월 SCC를 수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정부에서 정해졌던 36달러가 트럼프 정부를 거치며 7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51달러(6만원)로 올라갔다.

영국은 24파운드(38만 원), 독일은 180~640유로(24~85만 원), 프랑스 87유로(11만 원)로 주요 국가별 SCC도 천차만별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서는 우리나라 SCC를 26,6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2015년 연구로 이후 별도로 공개된 SCC는 없는 실정이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수칙은 보통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30% 이상 줄이면 1인당 연간 4.3kg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식인데, 이를 ‘음식물 쓰레기 30% 이상 줄이면 1인당 연간 12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기억하여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실질적으

로 이행하고 감축하는 실천의 해이다.

단순히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축되고 이를 통해 몇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실천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상 SCC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SCC를 정확히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정확히 산정된 SCC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같은 탄소가격제도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新무역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토론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김영희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변호사

기후조례에 대하여

김영희(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 변호사)

1.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조례 TF 논의 내용

서울시의원안	에너지정책위원회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조례안 →조례 명칭에서 ‘녹색성장’ 뺄 것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호 ‘에너지 전환’의 정의조항→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한편, 에너지절약과 효율을 통해 에너지소비량을 낮추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며 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전환한다.” ■ 제13호 ‘녹색성장’ 정의조항 삭제 ■ 제14호 ‘녹색기술’ 정의조항에서 “단 핵발전을 위한 기술은 제외한다” 추가 ■ 서울시 조례안에서 정의조항이 탄소중립 기본법 정의조항과 중복되었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원칙에 추가 ○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

	<p>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p>
제4조 시의 책무	<p>■ 시의 책무 추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시장은 자치구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p>■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추가의견</p> <p>시장은 공공기관, 학교, 법인·단체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기후위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p>■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및 추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30년까지 2018년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이상을 감축목표로 한다.</u> ○ 시장은 감축목표 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초과 배출한 배출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p>■ 기본계획 포함 내용 추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 시장은 시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 대중교통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시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연도별 시행계획 조항 추가 ■ 조례 제정·개정·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 추가
제3장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수정 ○ 공동위원장 ○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추가 ○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련된 계획, 정책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12조(회의)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 탄소중립도시 추진 조항 추가 ○ 시장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전환)	■ 신·재생에너지 전환 수정 ○ 시장은 시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수정 ○ 노력하여야 한다.→녹색건축물을 조성하

	<p>기 위해 단계별 목표와 확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조항 ○ 지원조항, 세부사항은 별개의 조례로
제17조(녹색교통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교통의 활성화 수정 ○ 내연기관차의 판매, 운행 축소 정책 수립 시행 조항 ○ 도심 자동차 운행 제한 조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기관 우선 구매, 보급 지원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 대중교통수단 확대, 승용차 진입제한지역 확대
제18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19조(탄소흡수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흡수원 확대 수정 ○ 산림 훼손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 의무 조항
제20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조항 추가
	■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 조항 추가
	■ 순환경제(또는 자원순환)의 활성화 조항 추가
	■ 녹색식생활 활성화 조항 추가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사업	
제21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제22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점검 수정 ○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구체화 ○ 기후위기 대응사업 계획수립 ○ 기후위기 대응사업 비용 보조 ○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서 작성,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영향 조사체계 구축 조항 추가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 변화 및 시민의 건강, 생활 영향 조사 ○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조사, 평가
	■ 지역 물관리사업 조항 추가
	■ 녹색국토의 관리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건강관리 조항 추가 ○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관리 ○ 극한기후 극복대책, 시민안전 쉼터 조성 등
	■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전환 지원 조항 추가 ○ 녹색산업 분야 업종 사업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보장 지원 조항 추가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2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시민소통, 홍보 수정 ○ 녹색생활 지원시책 구체화 ○ 녹색생활 운동 재정적, 행정적 지원 ○ 1회용품 등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가이드라인 시행 ○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제25조(국가 등과의 협력)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제27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활성화 조항 추가 ○ 시민참여형 협동조합 지원 대상 및 지원 활동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조항 추가 ○ 실천 내용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조항 추가 ○ 설치근거, 재원조성, 용도 조항 →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는 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항이고,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으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특히 기금의 용도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조례로 폐지되는 다른 조례에서 빠지게 되는 중요한 내용 없는지 검토 필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에 빠진 조항들

<p>뉴딜 기본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 기후변화백서에 관한 조항 ○ 제15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조항 ○ 제16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조항 ○ 제23조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등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조항
<p>제3조(경과조치)</p>	

2. 의견

■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선언적, 계획 위주로 된 사항들에 대하여 조례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서울시 에너지조례에 근거하여 미니태양광, 소형태양광 보조금 지급
- 자치구 미니태양광 지원가구 수가 실제 설치가구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증했음(한진이, 윤순진, ‘시 자치구 미니태양광 보조금 확산과 정책효과 분석’ 참조)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 적응대책의 이행 관리 통제 강화

■ 탄소중립위원회에 지자체 행정에 대해 더 강한 권한 부여, 기후위기 대응, 완화 위해 독립적 통제 기능 강화

■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 확대를 위해 교육, 시민소통, 홍보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과의 연계도 필요

개별토론 4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주민발안운동

장동빈 전)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주민발안운동

장 동 빈 전)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

1.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소개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지난 2020. 3. 19. 출범한 경기도내 기후행동 연대조직으로 도내 환경.종교.노동.인권.사회.협동조합 등 180여개 단체로 구성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민 5만인 청원운동, 탈석탄금고조례(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운동, 350 기후행동 캠페인, 기후학교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성남, 시흥, 안산, 안성(준),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 등 도내 12개 시군 비상행동과 함께 연대하고 있음. 매월 월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공동행동 기획과 조직, 시민참여,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공유하며 활동하고 있음.

2.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주민발안 운동

1) 배경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 관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5% 이상 법제화에 따른 비판과 국가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기능, 조직 등이 시.도 등 전국적으로 일반화될 것을 우려. 이에, 지역에서부터 조례 제정운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고자 함.

- 조례 제정운동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운동임과 동시에 조례안 작성과 청구절차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 이를 통해 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사회협약’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대중적 시민운동의 계기로 삼고자 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 제정에 따른 주민의 직접참여와 의무규정 도입 등 변화된 제도적 여건을 활용해 조례 제정에서부터 기후운동단체의 운동성, 활동성을 극대화하고 시민과의 소통, 협력관계 극대화, 기후시민교육 등의 기회로 확대하고자 함.

2) 개요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시민안 작성

- . 2021. 9. 26. : 조례 초안 작성
- . 2021. 10. 1. / 10. 14. / 11. 02. : 시민안 마련
- . 2021. 11. 23. : 시민안 공청회 개최

※ 주된 내용

- . 9장, 49조, 부칙 3조로 구성됨.
- . 제1조(목적) :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포함.
- . 제2조(정의) : 기후정의, 탈탄소사회, 민관협치, 공익활동 포함.
- . 제3조(기본원칙)과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등에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등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권리를 도민의 권리로 규정함.
- . 제9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이상.
- . 제4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 심의,의결기관으로 성격 부여 / 공동위원장 - 도지사, 민관위원 중 호선 / 정기회의 분기별, 임시회의 위원 1/4이상 요건 완화 : 기 위원회 평가 등 / 도민정책참여단 - 의견수렴, 정책참여 보장
- . 제25조 (순환경제의 활성화) 추가,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의 육성

등은 불포함.

- 제31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포함
- 제33조 (자원순환형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포함.
- 제7장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위법의 녹색성장 규정 중 그린워싱은 불포함.

※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시민안 초안에 포함된 ‘합의제 행정기관’ 삭제

- 주민발안법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3호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주민발안 운동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운동적으로 접근 또는 이후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함.

㉠ 연서 목표 인원: 114,559명 (경기도 18세 이상 주민 총수 11,455,940명, 법적 연서 주민 수 32,732명(산출기준: 1/350 이상)

㉡ 기간 : 2022. 6. 5. ~ 8. 22. (2022년 연내 제정 목표와 집중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함)

3) 추진계획 및 일정

㉢ 주민조례 발안 준비기간 : 2022년 3월 16일 ~ 6월 4일

- 2022. 4. 21. : 주민발안 운동 선포식 (경기, 수원, 고양, 남양주, 안성, 안산, 안양, 의정부 등 참여)
- 2022. 4. ~ 5월 : 도내 시·군별 지역단체 간담회와 시민설명회 개최
- 2022. 5월 : 주민조례 발안 청구 신청(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전자서명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 2022. 5. 26. 현재,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전환 기본조례’ 청구서 제출됨. 주민e직접(<https://www.juminegov.go.kr/>)

㉣ 향후 추진일정

- . 2022. 6. 5. : 주민조례 발안 시작 선포
- ※ 2022. 5. 20.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원입법예고 중.
- . 2022. 6. 5. ~ 8. 22. : 주민조례발안 청구인명부 작성.
거리서명, 문화제, 강연회, 토론회 등 다양한 캠페인 결합.
-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보장기간: 광역 30일 이내
- . 2022. 10. 11.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및 도의회 안건 상정을 위한 활동
- . 2022. 11. 1. : 도의회 본회의 상정 예정.

3. 주민발안 운동의 기대효과

- 광역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참여형 자치법규 제정.
- 경기도의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등 수많은 계획과 정책이 공전되는 현실을 시민운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 조례 제정과정에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공론장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협약’으로 성숙시키고자 함.
- 기후운동의 대중화와 운동역량 배가를 통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숙된 시민운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

- 제정목적 : 지방자치법과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청구권자 18세 이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 청구요건의 대폭 완화
- 전자서명 가능(행안부, 주민e직접)
- 청구인 명부 간소화
- 주민청구조례안의 보호 -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의결, 임기만료라도 계속 심사.

개별토론 5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 조례제정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탄소중립 조례제정

김 동 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원

1. 우리 협의회 소개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 따라,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른바 ‘지방4대협의체’* 중의 하나임.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우리협의회 대표회장님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른 구성원이면서, 올해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복수의 대표자 중 하나임.

2. 탄소중립 조례 관련

- 기초정부의 자치입법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22. 3. 25.),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이미 서울 도봉구 등 몇몇 기초 지방정부에서는 ‘21. 8월, 탄소중립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로 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므로, 자치입법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탄소중립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존 조례(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는 조례 전체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제·개정 및 폐지해야 할 것임.

* 특히 '22. 7. 5.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함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제정 작업

- 법령에 따라 위임된 최소한의 사항만 다루는 조례를 만든다면, 입법편의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한 것이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완결된 서사구조를 갖춘 '글'로서의 자치법규라는 의미가 퇴색될 것임
- 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을 단순히 추가로 반영하는 조례 제·개정작업을 넘어, 지역 사회를 규율하는 자치법규를 지방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 수 있다면, 조례 시행과정의 주민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음.
- 관련 근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었음.
 - * 법제3조(기본원칙) 7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 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21. 9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의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청 및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함.
 - 이 단체는 그 이후 '정부(안)'이 아닌 '시민(안)'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과 <경기도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직접 만들었음
 -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함.
- '21. 11월, 기초 단위인 서울시 양천구에서는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 조직인 양천시민사회연대가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 특위 주도로 양천구 탄소중립 조례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음.
 -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출범기념 특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전문가 특강을 듣고 바로 '탄소중립기본법 읽기모임'을 진

- 행하면서 시민이 제안하는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실행에 있어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과정과 방법을 조례로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 '22년, 양천시민사회연대는 본격적으로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자료들을 참고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직접 만든 후 양천구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구함.
 - * '22년 3월 7일, 양천시민사회연대는 양천구의회 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구청, 의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고, '22년 3월 14일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서울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조례의 법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의회가 탄소중립 조례 제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논의한다면 조례의 실행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가 목표 대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 탄소중립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누구와 함께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등 기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및 국가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 보면 좋겠음.
 - 특히 자치법규라는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참석자의 '만족도' 및 '주권의식'을 보다 확대시킬 수 있음.

개별토론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차승연 전)제8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의원

<토론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

- 전) 서대문구의원 차승연

○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중립법의 시행에 맞춰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기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원칙,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7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제13조)

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 및 목표관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제19조)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20조~제29조)

마. 주민참여,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협력사항, 재정지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제30조~제39조)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관계부서 : 기후환경과

○ 조례 검토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구는 2030년까지 2018년의 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구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5년마다 재검토)

→ 서대문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연차별 시행계획

• 기후위기 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시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환경백서 발간)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정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를 통해 5년마다 '환경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서대문구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백서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음.

서대문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 기본 조례」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2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1조(분과)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둔다.

1. 환경교육
2. 기후위기주민행동
3. 에너지전환
4. 자원순환
5. 생태보전
6. 녹색교통

제1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전입금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 등

→ 탄소중립 기본조례와 기금 조례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입법효율 상 필요하다고 봄. 기금 재원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함.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3.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증진 사업
4.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 기후위기대응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 기금 사용에 대한 준비 미흡

제28조(기금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후위기 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제65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 ① 법 제79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두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둘 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 규칙」에 따라 채용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구의회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매년 구의회에 연차별 시행계획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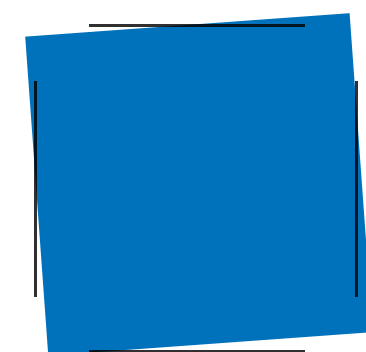
제39조(참여활동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후위기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그 공로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
2.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감량 등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
3.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대기질 개선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
4.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저탄소 실천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후위기 대응활동

개별토론 7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송인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방안

송 인 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

I. 배경

- IPCC 1.5도 특별보고서('18) 이후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20.10),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1.9)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필요

II. 조례 제정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

- 환경부는 각 지역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참고조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음('22.3)
 - 해당 참고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마련함
- 그 외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진행 중으로,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III. 참고조례안 주요 내용

- 참고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광역은 총 5장 34조, 기초는 총 5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음
 - 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지자체와 주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

- 2장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지역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감축목표와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을 담았음. 다만, 탄소중립 목표연도, 감축목표의 기준 연도와 목표연도 등은 지역 상황에 맞게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음
- 3장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방법, 심의·의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4장에서는 에너지전환, 녹색건축 및 녹색교통, 친환경차 보급, 물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적응과 관련한 시책을 포함하고 있음
- 5장에서는 탄소중립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 실천연대 참여, 다양한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을 정하고 있음

IV. 보완사항

- 참고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에서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추가로 많은 내용을 포함하기는 어려움
- 또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똑같이 기술할 경우 법령 개정시 법령과 조례의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지양하였음
- 따라서 지자체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감축 여건, 기후위기 적응문제 등을 특화하여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봄
- 참고조례안은 각 지자체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역에서는 참고조례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비전과 정책에 따라 조례를 수립하여야 함

V. 향후 계획

- 환경부는 기존 참고조례안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임
- 아울러 각 지역의 조례 입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의 조례안에 대해 문의 사항이나 검토요청이 있을 때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개별토론 8

탄소중립 관련 조례 법제도 개선사항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탄소중립 관련 조례 법제도 개선사항

최 환 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